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6드단212032 위자료 및 손해배상(사실혼부당과기)
원 고	갑 (1987년생, 여)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1. 을 (1985년생, 남) 주소 송달장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2. 병 (1989년생, 여) 주소 송달장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7. 9. 6.

주 문

1.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을은 3,0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연대하여 위 돈 중

-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7. 9. 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원고와 피고 을은 해외의 한 농장에서 만나 2009. 9.경부터 교제하였다. 2010. 3.경 귀국한 이후 피고 을은 2013. 1.경 부산에 있는 **조합에 취직하여 **지점에서 근무하였고, 서울에서 일하던 원고도 퇴직하고 부산에 와서 취업준비를 하여 2013. 8.경 울산에 있는 은행에 취직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을은 2015. 11. 21. 울산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3) 결혼식 이후에도 근무지 문제로 평일에는 원고는 울산의 친정집에서 생활하고, 피고 을은 신혼집으로 매수한 부산 소재 아파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생활하였으며, 원고가 금요일 퇴근 후에 이 사건 아파트로 가서 피고 을과 함께 지내다가 월요일 아침에 울산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식으로 생활하였다.

(4) 원고는 2016. 10.경 피고 을의 휴대폰을 보다가 피고들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를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다. 원고, 피고 을, 원고의 모, 피고의 모가 2016. 10. 24.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만난 자리에서 피고 을은 '(피고 병와) 만난 지 두 달 되었고, 뭘 하려는 생각은 없었으며, 퇴근하고 나서 같이 커피 한 잔 하는 사이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 을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떻게 바람을 피냐고 따지는 원고에게 2016. 10. 25. '미안하다, 내가 미쳤던 것 같다. 직원들이 아직 지점장님한테는 말 안 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답하였다. 원고는 이 무렵 피고 병에게도 언제부터 만났는지 추궁하였는데, 피고 병은 두 달을 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5) 피고들이 근무하는 **조합 **지점의 전체 직원은 2017. 4. 4. 기준 8명이다. 피고 을은 2013. 1. 7.부터 현재까지 위 **지점에서, 피고 병은 2014. 7. 3.부터 2017. 1. 10.까지 위 **지점에서 근무하였다.

(6) 피고들은 퇴근 후 만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2016. 4. 10.경부터 원고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확인한 2016. 10. 27.경까지 모두 655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매우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다.

(7) 피고 을은 부정행위가 밝혀지자 원고에게 미안함을 표시하였으나 점차 원고와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집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조합의 사실조

회회신,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1)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도 처음에는 2016. 8.경부터 알게 된 사이라고 주장하고(각 2017. 3. 20.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로부터 2016. 10.경 부정행위 추궁을 당할 때에도 그러한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피고들 근무지의 전체 직원이 8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 병이 근무를 시작한 2014. 7. 3.부터 피고들이 알고 지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들이 2016. 8.경부터 알게 된 사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등을 축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들은 2016. 4.경부터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친밀하게 지낸 점, 원고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추궁한 이후에 원고와 피고 을의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원고와 피고 을이 완전한 별거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이 파탄에 이를 정도의 갈등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을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책배우자인 피고 을이 오히려 더 혼인관계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숨기고 매우 자주 전화 통화를 하고 퇴근 후 식사, 커피 등을 이유로 만남을 가진 것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실혼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결혼식 및 혼수 비용 등으로 약 5,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결혼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액이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지출이 되어버리는 점, 원고와 피고 을이 교체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기간, 피고 을이 자신의 주된 잘못으로 사실혼이 파탄되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배려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파탄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며 원고를 비난하는 점, 피고 병도 자신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사실혼이 파탄되었음에도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 및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을이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 병이 피고 을과 연대하여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을은 3,0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2. 2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17.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을과의 결혼을 위하여 약 5,000만 원을 지출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와 공과금, 부산에서의 공동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주말에 가사활동을 한 점, 피고 을이 이 사건 아파트 구입을 위하여 실제로 투입한 돈은 6,000만 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피고 을과 약 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며, 원고의 기여도는 50%이다.

원고와 피고 을 사이의 분할대상 재산은 이 사건 아파트가 유일한데, 그 가액이 2억 8,000만 원 이상이고, 피고 을의 대출채무가 1억 9,000만 원이므로, 피고 을은 순재산 가액 중 1/2에 해당하는 4,500만 원을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을이 2015. 11. 12.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그 매수대금 2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피고 을의 모가 지원하고, 1억 5,000만 원은 신한은행의 담보대출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피고 을의 신용대출금으로 마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데에 기여한 바는 없다고 인정된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공과금 등으로 함께 1,316,99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11개월 동안 관리비, 공과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월 평균 12만 원 정도로 소액인 점, 원고도 주말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한 점, 원고와 피고 을의 사실혼 기간이 11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사실혼 기간 동안에도 주말 부부로 생활하면서 각자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점, 피고도 결혼식 비용 등을 지출하였고, 원고의 결혼식 및 혼수 비용 지출과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재산 감소를 방지하였다거나 재산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 을이 모의 지원 및 대출금으로 마련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가 그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을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 가액 중 50%를 재산분할로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재남